

무역학의 정체성 및 연구방향 재정립을 위한 비판적 검토*

심종석**

A Critical Study on the Reformation of Identity and Researching Field for the Foreign Trade's

< 목 차 >

개 요

I. 서론

II. 무역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III. 무역의 본질에 관한 유사개념

V. 결론 : 무역학 연구방향의 재정립

참고문헌

ABSTRACT

개 요

새로운 국제경제환경의 급변으로부터 비롯된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그간 무역학의 본류는 그 정체성이 갈수록 퇴색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본고는 현재 무역학 분야에 무엇이 문제이고 또한 당해 문제점은 어떠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고는 논제에 결부할 수 있는 그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무역학의 유관 분야에 대한 정체성을 되짚어 보는 중에 인접학문과의 차별성 내지 연관성, 연구범위 및 그 대상, 국제(상)거래, 무역실무, 국제상학, 국제통상, 무역상무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분기, 나아가 여타 인접 학문분야와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무역학의 연구범위에 주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그 결과로서 무역학의 정체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불분명하고도 모호한 유사개념들은 마땅히 무역학의 범위에서 통폐합하

* 이 논문은 2008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 (경영학박사.법학박사)

심종석

여야 하고, 다만 그 종속(전공)분야로서 무역이론 . 무역경영 . 무역정책 . 무역법규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당위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이 같은 결과는 향후 각 대학의 특성화 내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첩경으로서, 선의의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계기로서 뿐만 아니라 무역학의 유관(인접)분야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당해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익으로서 시사하는 바 클 것임을 부각하였다.

주제어 : 무역학, 국제(상)거래, 무역실무, 국제상학, 국제통상, 무역상무

I . 서 론

1. 문제의 제기

1960년대초 한국경제는 외국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과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탈후진국의 전환기적 이정을 마련하고, 동시에 자립과 번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경제체제의 총체적 대응체계를 확립하였다. 곧 당해 이정의 핵심은 이른바 경제근대화의 기치아래 중 . 장기적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본원적 체질을 자립경제로 개선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전환기적 이정은 국가의 부존자원이 극도로 빈약한 처지에서 그나마 경제근대화를 위한 국민의 의식수준 또한 극히 결여되어 있었던 까닭에, 계획과도 같이 그다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국가적 대계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편으로서, 마땅히 앞선 선진국의 발자취로서 수용했어야 할 ‘선농업 후공업’이라는 근대화전략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한국적인 독특한 근대화 모형으로서 ‘농공병진’(農工竝進)이라는 힘겨운 전략을 채택하여 그 성과여부에 국가운명을 맡겼던 것은 실로 모험 그 자체이기에 충분하였다.

이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이르러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 보면, 1964년 불과 수출 1억불 달성에서 40여년이 지난 2007년에는 3,700억불을 초과하기에 이르렀고, 목전에 둔 2011년에는 무역규모 1조불을 기대하고 있는 바, 이는 세계경제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상대적 평가로서 우리의 수출성과는 1964년 세계 90위권에서 2007년 기준 세계 9위로 발돋움 하였는데,¹⁾ 그 위상을 달리 절대적으로 환산하면 아프리카 53개국의 전

1) 중계무역을 주로 하는 네델란드, 벨기에를 제외할 경우.

글로벌 환경하에서 무역학 분야의 연구방향 재정립을 위한 일고찰

체 수출실적을 상회하는 성과일 뿐만 아니라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35개국의 수출 규모에 상응하는 실적에 달한다.²⁾

이처럼 불과 40여년의 짧은 기간을 통해 3,700배의 성장과 연평균 증가율 21%에 달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어느 국가의 인적자원보다도 뛰어난 우리나라 무역인력의 역량과 그 열정적 헌신에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 같은 배경은 1960년대 이후 국가경제의 부흥을 위한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대학 학과 내지 학부에 편제하였던 무역학과의 줄곧 그 폭과 범위를 다변화하는 중에 수출 주도를 위한 산업부양의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국가성장동력이 되었던 섬유, 화공, 건축, 토목, 기계, 조선, 전자, 전기, 컴퓨터 등의 유관학과와 결합하여 수출주도형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인적자원을 지속적으로 양성, 배출할 수 있었던 한국 경제사적 실재에 근거한다.

그렇지만 지난 과거는 한낱 과거에 지나지 않을 뿐, 지난 최근 이후 현재를 통틀어 극도로 복잡다단하게 고도화 내지 다변화 되어 가고 있는 국제경제환경은 초국가적 무한경쟁체제로 끊임없이 급변하고 있는 바, 마침내 우리에게 또 다른 국가적 생존경쟁에 임할 수밖에 없는, 이를테면 예전의 농공병진에 국가운명을 담보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정확립의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고 있는 차제에 있다.

새로운 국제경제환경의 급변으로부터 비롯된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그간 무역학의 본류는 그 정체성이 갈수록 퇴색되어 급기야 위기의 파고속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달리 경제활동 인구 5명 중 1명이 무역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의 현상황을 고려할 때, 마땅히 그간의 역량과 열정을 추슬러 재결집하여야 한다는 당위로 역설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무역학 분야에 무엇이 문제이고 또한 당해 문제점은 어떠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이슈로서 부각될 수 있을 것인데, 요컨대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나름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써,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무역학은 나날이 그 입지와 지위가 좁아지거나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³⁾ 그 이유는 시대적 상황 내지 요구에 진

2)「stat.kita.net」. 이하 본 고에서 참조한 웹사이트[URL]은 본 고 제출시점까지 웹상에 현시(display)되고 있음을 참고한다. 기술편의상 이하 프로토콜명(http://)은 생략하였다.

3) 분석대상 논고로서 오용석(2001) 교수는 “무역학은 대학의 독립적 학과체제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학문적 관점에서는 국제경제학이나 국제경영학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이에 무역학이 하나의 독립적 학문체제로 인정받는데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시로서 “최근 대학의 학과통합으로 무역학은 독립적 지위를 상실해가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무역학이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무역학이라는 명칭이 하나의 학문을 대표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연구영역이

심종석

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약했었고, 또한 그 정체성을 바로 분별하는 중에 인접학문 분야와의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조체제를 적극 추구하고자 하는 열의가 부족했던 결과에서 비롯되었음이 핵심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이상의 의지와 관심의 부족이 그간 무역학의 연구범위 · 연구방법 · 적용대상 · 접근방법 · 교과과정 · 연계과정 · 심화학습 등의 분야에서 이를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재편의 때마다 시의성 있게 재정립하지 못한 이유에서 빌미가 된 예견된 결과로 간주하고, 당해 사안별 문제점과 극복방안 등을 중심으로 그 대안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무역학의 본류와 정체성을 올바르게 돌이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신속 · 민활히 대처할 수 있는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나, 동시에 미약한 부분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기대를 앞세워 이하 나름의 시각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분석대상으로 취한 선행연구

무역학 교육의 새로운 이정확립을 위한 논의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게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그 가운데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은 아마도 2001년 한국무역학회가 주관한 ‘변화의 시대, 무역학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하에서 개최된 학술대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당해 학술대회 발표집에서 주목되었던 기조논문은 오원석 교수의 “새로운 환경하에서 무역상무연구의 방향모색”이었는데, 본 논문은 ‘무역상무’(貿易商務) 분야의 독자성을 담보할 수 있는 취지에서 뿐만 아니라 나름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시각에서 큰 주목과 반향을 촉발하였다. 오원석 교수는 본 논문에서 우선 논제에 기한 쟁점을 명확히 하고, 차례로 무역상무의 정체성 · 연구범위 · 연구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던 바, 당해 논제에 기하여 그 논리의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외에도 개별학자에 의한 여타의 학술논문은 그동안 실로 다양한 주제로 발표되었다. 본 고의 논제에 결부할 수 있을 주요 선행논문으로는 오원석(1995) 교수의 논문은 포함하여 이하 각주와 같이 언급할 수 있을 것인데,⁴⁾ 그 중에 본 고의 논점을 부각할 수 있는 대상을 발췌하여 일부 비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원배(2005) 교수는 현재 무역학과 · 국제통상학과 · 국제경제학과 등의 분

모호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4) 한주섭(1994), 오원석(1995), 강원진(2001), 오용석(2001), 홍성규(2004), 김원배(2005), 박광서·유광현(2008) 등.

글로벌 환경하에서 무역학 분야의 연구방향 재정립을 위한 일고찰

야가 동일한 연구범위와 방법을 지향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각기 그 명칭을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역학 관련 교과과정에 대한 정리, 교과목의 내용정리, 법적 지식을 겸비한 실무중심 교과목으로의 편제, 무역용어의 이해를 위한 무역영어 교과목의 개발 등을 향후 무역학 진로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생각건대 이 대안은 무역학의 분류와 그 정체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무역학 교과과정의 통일작업을 위해 영역별로 분류한 교과목 재편의 주장 또한 이와 다름이 없다.

다른 한편 한주섭(1994) 교수는 ‘국제상거래’(國際商去來)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제관행과 관습 및 법리에 주안점을 둔 무역학의 주류로서 ‘국제상학’(國際商學)의 정체성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 실체를 합리성 . 경제성 . 법리성에 기초하여 상인 간 광범위한 가변성마저도 망라한 총체적 역량을 담보할 수 있음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무역학의 지류로 국제무역이론과 국제경영의 관점에서 창의적 능력배양을 이와 병행하여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음에, 그 나름의 국제상학적 시각을 명료히 확립 . 제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무역학의 유관분야에 대한 정체성을 되짚어 보는 중에 인접학문과의 차별성 내지 연관성, 연구범위 및 그 대상, 무역상무 . 무역실무 . 국제상학 . 국제(상)거래 . 국제통상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분기, 나아가 여타 인접 학문분야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무역학의 연구범위에 주안점을 두고 고찰하고자 한다.

II. 무역의 정체성에 기한 문제

1. 무역의 대상과 주체에 관하여

사전적(辭典的) 의미로 ‘무역’(貿易)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품을 매매하는 일’로 풀이된다. 간략히 함축하면 무역은 ‘국제물품매매’(國際物品賣買)를 그 대상과 범위로 특정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한편 영어는 ‘trade’로 표현되는데, 그 어원은 발걸음(tread) 또는 밟아 다져져 생긴 행로(track)란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결국 ‘trade’는 ‘어떠한 길이나 항로를 따라서 물품을 교환하는 행위’로 새길 수 있다. 다른 한편 일어는 ‘국가간 상품의 거래’, ‘수출과 수입의 총칭’, ‘국제적으로 재화를 교환하는데 따른 상거래행위’로서 풀이되며, 이 경우 무역은 ‘교역’(交易)에 의제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貿易’이란 한문 단어는 고대 중국의 고전인 司馬遷

심종석

의「史記」와 曾先之의「古今歷代十八史略」에 나오는 ‘以物相貿易’과 ‘貿易衣服回傳數周’라는 문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음이 정설인데, 이 경우 무역은 ‘교역’(交易)과 동일시 되어 공히 매매(賣買) 또는 교환(交換)을 의미한다.⁵⁾

그렇다면 무역(貿易, trade)은 이를 종합하여 그 대상과 범위를 ‘국가간 물품에 관한 매매행위’로 특정할 수 있을 것인데, 다만 이 경우 문제시 되는 점은 무역의 주체가 아닐까 생각된다. 무릇 당해 주체의 특정에 대한 논점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무역학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단초는 앞선 한주섭(1994) 교수의 논문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곧 한주섭 교수는 무역학에 뜻을 둔 학도는 “‘국제상거래’(國際商去來)에 있어서의 지배적인 관행과 관습에 대하여 순응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합리성과 경제성 및 법리적 측면에서만 판단은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제상거래에 있어 관행이나 관습은 일단 ‘상인’(商人)간에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면 일시에 합리성 경제성 또는 법리성을 근거로 수정 또는 개선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국제상거래’(國際商去來)와 ‘상인’(商人)이라는 단어이다. 양자의 공통점은 외견상 공히 ‘상’(商)이라고 하는 음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상’의 의미를 명료히 인식하는 것은 이하 논의되겠지만 무역학의 정체성에 기한 유사개념을 정립함에 있어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商)은 본래 자전(字典)적 의미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물건(物件)⁶⁾을 사고파는

5)「史記」, 貨殖列傳, ‘諸侯四通, 貨物所交易也’의 원전에 기초한다. 이 말은 “(도(陶)나라는) 사방이 제후국에 둘러싸여 물자의 교역이 빈번한 곳이다.”는 뜻으로 월(越)나라 명재상 범려(范蠡)의 말로 기록되어 있다. 참고로 범려는 춘추시대에 월나라의 왕 구천(勾踐 : 재위 B.C.497-B.C.465)을 섬긴 유명한 정치가이자 사상가로서 지략이 뛰어나고 처세에 능하였으며, 정치와 군사는 물론 상업에 이르기까지 통달한 불세출의 인재였다. 당시 중국의 도(陶)는 동으로는 제(齊).노(魯), 서로는 진(秦).정(鄭), 북으로는 진(晉).연(燕), 남으로는 초(楚).월(越)과 접경을 이루는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그는 그곳에서 다시 도주공(陶朱公)이라는 이름으로 무역을 하여 거부가 되었던 바, 그 명성을 천하에 떨쳤다. 주지하듯 그와 서시(西施)와의 연정사(戀情事)는 지금까지 유명한 일화로 회자되고 있다.

6) ‘물건’(物件)은 법률용어로서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 98). 따라서 민법상 물건이기 위해서는 유체물이나 관리가능한 자연력이어야 하고, 사람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외계의 일부로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다만 무역학의 시각에서는 이를 달리 물품(物品)이라고 의제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재화의 매매에 주안점을 둔, 곧 같으나 서로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법리적 시각에서 ‘국제물건매매(또는 국제동산매매)’, 상학적 시각에서 ‘국제물품매매’라고 달리 사용하고 있음은 아마도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하 본 고에서는 무역학의 시각을 중시하여

글로벌 환경하에서 무역학 분야의 연구방향 제정립을 위한 일고찰

[賣買] 행위'로 정의된다. 따라서 '소비용 또는 가사용 목적으로 (소비적 편익을 얻기 위해)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는 '상'의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상인'은 '이익을 얻기 위해 물품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⁷⁾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상'의 포함여부에 개의치 않고 흔히 (상)거래, 국제(상)거래, 전자(상)거래 등과 같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상사(商事)와 민사(民事), 상행위(商行為 : commerce)⁸⁾와 법률행위(法律行為 : transaction⁹⁾)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¹⁰⁾

한편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논점은 '상거래'(commerce)와 '거래'(transaction)를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과 설령 구분이 가능하다면 그 법적·상무적 실익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¹¹⁾

국제상거래에 있어 상인의 상행위에 기해, i) 각국 실정법상 소비자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는 입법경향에 비추어 볼 때, ii) '계약자유'의 원칙(liberty of contract)¹²⁾에

'물품'으로 사용한다.

- 7) 이는 우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商, 4-5., 日本 商, 4.).
- 8) 상행위(商行為)란 법률상 '영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상인]의 활동'을 말한다(商, 46-47., 日本 商, 501-503.).
- 9) 'transaction(s)'은 대개 '거래'(去來)라고 번역되나 법률용어로서는 '법률행위'(法律行為)를 지칭한다. 이 경우 법률행위(transaction)는 일정한 일을 하거나 또는 성취하는 등 내용은 여러 가지이지만 대개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 행위의 결과 소(訴)로써 이를 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transaction'에 포함된다. 따라서 'transaction(s)'은 거래 또는 계약보다 의미가 넓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Gifis, 1996).
- 10)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법의 경우 입법 불비에 의한 오류도 엿보인다. 일례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법률제8635호) 제2조 제1항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전자거래기본법'(법률제8979호) 제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와 동일시하고 있다.
- 11) i) 그간 이 같은 논점에 대한 수차례의 검토와 토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그 구분의 실익이 미미하다는 주장 내지 의견이 팽배하여 실상 관련 입법안의 상정시에나 심지어 학계에서의 법리적 순수검토 분야에서 마저도 의견개진이 미약하였다. 그렇지만 무역학 분야에 있어서는 당해 구분의 실익에 대한 도외시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제반 국제상사법 내지 국제규범과의 법리적 조화의 관점에서 상당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할 것이다. 앞서 한주섭 교수가 사용한 '국제상거래'와 '상인'이라는 단어를 눈여겨 볼 수 있음은 이 때문이다. ii) 'commerce'와 'transaction(s)'의 구분에 따른 법적 실익에 대한 상세는 심종석(2002)를 참조. iii) '국제'(國際) 또는 '국제성'(國際性)에 대해서는 이하 후술한다.
- 12) i)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연혁에 비추어 계약의 자유는 소유권과 결합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제도로 전환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경제적 약자는 경제적 강자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부종계약). 결국 계약자유 원칙을 관철하면 경제적 강자를 보호하게 되는 반

심종석

기하여 상대국 국내법 내지 강행법 적용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무역 주체로서 상인[기업]의 신속·민활한 상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배려하는 차원에서, iii) 나아가 ‘법적 안정성’(legal stability)과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를 전제할 때, 당해 용어의 구분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¹³⁾

왜냐하면 ‘한정된 (공간적) 영역’[legal territory]은 상대적 개념으로서 ‘외부영역’[linked-territory]과 비교할 경우 전통적으로 동질사회[法領域]에 걸맞는 독특한 관습과 관행을 배타적으로 구분되게 하는 경계가 되며, 나아가 법률관계에 우선하여 공통의 이해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보편타당하기 때문이다.¹⁴⁾

환언하면 소비자를 제외한 ‘상거래’를 ‘거래’와 구분할 경우 이에 참여한 상인은 국내·외 상행위를 불문하고 소비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제반 국내법 내지 강행법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바, 이에 따른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실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계약자유 원칙’(liberty of contract) 내지 이를 구체화한 ‘상인의 말은 보증서와 같다’(businessman's word is bond)는 언명(言明)은 당해 ‘상’ 또는 ‘상인’, ‘상’거래, ‘상’행위 등에 있어서의 ‘상’의 개념정립으로부터 그 실체적 의미와 구분의 실익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선 한주섭 교수의 ‘국제상거래’라는 단어와 ‘상인’이라고 하는 단어사용을 재삼 눈여겨 볼 수 있음은 이 때문이다. 동일한 취지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국내법 내지 국제통일법규범의 법규정을 일례로 제시하면 이하 각주와 같다.¹⁵⁾

면, 경제적 약자를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법적 평형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20세기 현대계약법의 법률이념은 계약자유 원칙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는 것이 사회정의 실현하는 길이 된다고 인식하기에 이르러,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각양의 제한을 존치해 두고 있다. ii) 그렇지만 본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는, 이러한 제한이 국제성(internationality)을 체화한 상인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자유 원칙이 본연의 취지대로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적용되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달리 법영역(legal territory)을 초월한 외부영역[linked-territory]에 있어서는 경제적 약자의 구분에 따른 이유와 실익이 없음을 의미한다.

13) Bonell(1997). ; 동일한 취지로 참고할 수 있는 국제규범으로서는 ‘EU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0)’, L 178/7, paras. (55)-(56).,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UN협약’(CISG), Art. 2, (a)., ‘국제상사계약에관한일반원칙’(PICC), Preamble. 등을 참조.

14) i) ‘한정된 (공간적) 영역’이라고 함은 ‘모든 법은 응당 영토적이다.’(all law is *prima facie* territorial)라고 하는 법언에 기초한 별단의 표현임을 참고한다. ii) ‘한정된 (공간적) 영역’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외부영역’[linked-territory]이라 함은 영역 밖의 또 다른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역과 영역이 운동력 있게 연결되어 있는, 곧 법적용의 다른 테두리 내에서의 공간적 의미라는데 주안점을 둔 논자의 용어임을 참고한다.

15) i) 로마법(*ius gentium*)상 확립되어 있는 ‘*pacta sunt servanda*’의 원칙하에서 이민족(異民族)간 적용된 신의칙에 관한 법적용에서 ‘상인’(Klein, 1993). ii) 미국 실정법으로서

글로벌 환경하에서 무역학 분야의 연구방향 재정립을 위한 일고찰

요컨대 무역의 주제는 응당 소비자가 배제된 개념으로서 ‘상인’이 마땅하고, 이는 ‘국제상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무역’의 정체성을 논함에 있어서도 합당한 논리의 배경일 수 있다.

2. 무역의 본질적 의미에 관하여

전술한 바를 토대로 논자는 ‘무역’의 개념을 함축하여 ‘이국간(異國間 : *inter-national*), 상인간(商人間 : *inter-merchant*) 상거래(商去來 : *commerce*)’로 확립하고자 한다.

그 논거를 차례로 살피면 우선 ‘이국간’의 의미는 대개 ‘국제성’(internationality)을 체화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대계약법에 비추어 국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인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이국에 존재할 것’과 ‘서로 다른 법영역하에서 법 적용에 따른 규율의 범위를 달리 할 것’ 등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혹자는 무역을 ‘국내무역’(domestic trade)¹⁶⁾과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¹⁷⁾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 취지는 대개 상이한 수출·입 절차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상기한 ‘이국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새길 경우 달리 표현하기에 전술한 ‘두 가지 요건’의 충족여부를 그 기준으로 볼 경우 그 실익이 의문시 된다. 이를테면 수출·입 절차를 골자로 ‘국내무역’을 분기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의미는 ‘국내무역’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인 바, 그렇다면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법 적용에 기한 ‘한정된 영역’과 ‘외부영역’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시 되는 것은 ‘무역’과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개념의 상충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개념상 ‘국제무역’을 ‘무역’과 동일시하는 경우 양자 공히 그 적용범위에 있어 국내무역을 포섭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국간 상인간 상거래’라고 하는 개념을 수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제상학’이라는 개념 또한 ‘국내상학’이라고 하는 상대적 개념의 존재를 응당 인식하고 이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¹⁸⁾

UCC, §2-104, (1), (3)., UCC, §2-207, (1), (2). iii) 국제통일법규범으로 CISG, Art. 2, (a). iv)., PICC, Preamble(Bonell, *op. cit.*). 등.

16) 혹은 ‘국내상업’(國內商業) 또는 ‘내국무역’(內國貿易)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17) 마찬가지로 ‘대외무역’(對外貿易) 또는 ‘외국무역’(外國貿易)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18) 후술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제상학’이 개념상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그 독자성을

심종석

따라서 ‘국내무역’을 ‘무역’에 있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기한 국내상업(國內商業)의 부수적 과정 내지 절차를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함에 무리가 없다면, 이를 ‘무역의 테두리’(곧, legal territory) 내에 가두어 부수적 종속부분[subset]으로 인식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국내 실정법상 법 적용에 따른 절차와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 국한한다면 마땅히 ‘국내무역’과 ‘국제무역’이라는 의미가 바로 새겨질 수 있겠지만, 달리 ‘무역’의 본질적 의미를 ‘국제무역’과 동일시해서는 무역학의 정체성을 바로 새김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⁹⁾

한편 ‘상학’(商學)이라고 하는 의미는 본래 일본의 대학편제에 있어 ‘상학부’(商學部) 또는 ‘상학과’(商學科)의 명칭에서 곧이곧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해 ‘상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법무’(法務)라고 하는 단어와 다름없이 ‘상무’(商務)라고 하는 어의(語義)가 전제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 단어[개념]이다. 곧 일본 국어사전에 기한 ‘상무’의 의미는 ‘상업의 사무’로 정의되며, 이 경우 ‘상업’(商業)이라고 함은 ‘생산자와 수요자간[商人間] 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일련의 사무 내지 사업’으로 해제된다.

따라서 ‘상학’은 ‘상무와 관련한 학문’이라고 축약할 수 있을 것인 바, 이에 ‘국제상학’(國際商學)은 ‘법역(法域)을 달리하는 이국간 상업활동에 관한 학문’으로 그 개념을 추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상학’은 개념상 ‘국제무역’과 마찬가지로 ‘국내상학’을 제외한 무역의 일부분으로서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무역상무’(貿易商務)라고 하는 어의는 표현된 단어 자체로서도 ‘이국간 상인간 상거래에 관한 사무’라고 해제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무역과 무역학이라는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무리 없는 표현이라 할 것이다. 다만 문제시 될 수 있는 사안은 ‘무역상무’ 분야가 지향하고 있는 연구범위 내지 연구방법 또는 학문적 정체성과 관련한 독자성 담보여부가 될 것인 바, 이는 전제각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상학’과는 정반대의 시각으로 부각되는 점이다.

III. 무역의 본질에 기한 유사개념

1. 국제상학(國際商學)에 관하여

바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명료한 정의, 곧 ‘무역’과의 차별성[개념적 분기]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국제상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연구범위 내지 연구방법 또는 학문적 정체성과 관련한 독자성은 별론이다.

19) 이는 논자가 우리나라 대학편제에 있어 ‘무역학과’가 아닌 ‘국제무역학과’의 명칭에 따른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국제상학’(國際商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간 각양의 논문에서 필요에 따라 이모저모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 가운데 국제상학의 본질적 의미와 연구방법을 포함한, 곧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는 앞선 한주섭(1994) 교수의 논문과 최두수(1996) 교수의 논문이 대표성을 띄고 있다고 보인다. 이상의 논문을 검토하기 전에 논자는 그 비평의 기준으로서 다음의 대의(大義)를 우선해 두고자 한다.²⁰⁾

국제상거래는 당사자 자치가 넓게 인정되고 있는 분야로서 이 경우 당사자의 목적은 당사자들이 자치적으로 형성한 정형적 약관에 의해 달성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제상거래에 관한 오랜 경험과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을 토대로 만들어진 빈틈 없는 약관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상거래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을 문제를 일일이 상정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가사 당초 예견 가능했던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해석에 있어 시간적·공간적 제한으로 인해 상호간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다.²¹⁾

이 경우 의견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국제사법질서하에서 당해 상거래와 관련이 있는 어느 당사자의 국내법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이는 곧 당해 문제해결을 상거래에 관한 국제사법이 준거법에 의하게 됨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당해 상거래에 있어 오랜 기간을 두고 확립된 자율적 규범에 의하여, 이를테면 통례로 존중할 수 있는 상관습에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양자에 대한 필요요건은 공히 국제상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국제통일법규범의 존부일 것이다.

그간 국제사회는 국제상거래의 활성화와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곧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상거래상 문제해결을 둘러싼 혼란을 최소화하고, 상거래에 임한 당사자 공통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여 왔다.

이들 노력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하나는 국제상거래 당사자 공통의 이해와 국제상관습의 확립을 위하여 각양의 표준서식 내지 상거래 약관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통일하는 등 당사자간 자율적 규범 내지 규칙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통일화 작업이었다. 이 양자는 분명 상호 의존적·보완적 관계성을 형성하는 가운데 서로의 영향을 제고해 가면서 국제상거래의 발전과 기여를 명분으로 각기 다른 길에서나마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고유한 규범확립의 길을 개척하여 왔다.

후자의 일환으로 그간 가장 주목되었던 작업은 각국의 국내법은 그대로 두고 국제

20) 심종석(2009).

21) 심종석(2007).

심종석

상거래에 적용되는 법규범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를 채택한 당사자들 사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고,²²⁾ 전자의 경우에는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시의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국제상거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취지에서 국제상관습을 기초로 한 통일규칙의 마련이었다.²³⁾

결론적으로 무역학의 영역에 국한하여 분석하면, 전자로부터 집적된 실체는 국제상사관련 법규범에 관한 법리적 성과 내지 연구결과로 집적되어 ‘상무적’ 필요에 절대적으로 기여(寄與)하였고, 후자로부터 형성된 법규범 등은 실제상 부각된 문제점 또는 통상의 확산에 기한 상관습법(commercial customary law)²⁴⁾ 등으로 ‘법적’ 성과에 지속적으로 수용되었는 바, 이 같은 상호 의존적·보완적 결과는 당해 국제상관습 내지 국제상관습법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보전(保全)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²⁵⁾ 이는 앞서 살핀 바, 상호 관계성에 대한 논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상의 논거에 무리가 없다면 대개 국제상거래, 보다 정확히는 무역에 대한 연구범위와 방법이 추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시각을 염두에 두고 재차 앞선 논문을 검토하면, 한주섭(1994) 교수는 무역학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실무·관행·관례·관습 및 법리를 그 연구대상으로 하는 ‘국제상학’ 중심의 학문분야라고 단정함과 동시에, 그 논거로서 국제상학은 국제상거래에서 실무관행이나 관례·관습상 수락되어 온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또한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상거래에서는 그대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²⁶⁾

22) 예컨대 대표적인 것으로 ‘CISG’, ‘PICC’, ‘유럽계약법원칙’(PECL) 등.

23) 예컨대 대표적인 것으로 ‘INCOTERMS’, ‘UCP’ 등.

24) 상관습법(commercial customary law)은 관행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상사에 관한 법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상사에 관한 사실상의 관행인 상관습과 일응 구별된다. 상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데 반하여, 상관습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의 효과로서 양자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곧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상관습은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데 반하여 상관습법은 일련의 법적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 상관습법 위반의 판결에 대하여는 법률문제로서 상고할 수 있는데 반하여 단순한 상관습 위반의 판결은 사실인정의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 등이다. 양자를 구별하는 표준은 장기간에 걸쳐 관행이 된 사실인 상관습이 실정법에 상응하는 법적확신을 얻을 때 상관습법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인 상관습도 사적자치에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해석의 기준이 되므로 실제로 있어서 양자의 구별은 별로 실익이 없으며 따라서 양자의 구별은 실익이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通說].

25) 三橋文明(1976), 絹卷康史(2000), 上原利夫(2002) 등.

26) 다른 한편 홍성규(2004) 교수는 한주섭(1994) 교수의 주장을 인용하여 무역을 이국간 행해지는 경제거래로서 물품의 매매를 포함하여, 운송·보험·금융·통신·관광 등 용역거래와 자본거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제상거래’로 지칭하고 있다. 나아가 무역학의 전반적인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정책학·경영학·상학·법학에서 그 기초를 닦고

글로벌 환경하에서 무역학 분야의 연구방향 재정립을 위한 일고찰

다른 한편 최두수(1996) 교수는 ‘국제상학’은 그 학문의 내용이 개별거래적 차원에서 거래당사자의 지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뜻밖에도 ‘무역’과 ‘국제통상’의 개념을 동일시하고도 있다. 아울러 국제상학의 연구분야는 차례로 무역계약 · 무역운송 · 무역결제 · 무역보험 및 무역클레임으로 대별하고 있다. 또한 국제상학은 거래당사자의 지위를 파악하는 것이니만큼 미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무역실무나 수출 · 입 절차의 개념과 가장 연관성이 깊은 학문이라는 점, 그 해석에는 법적 수단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 무역학의 제반영역 중 국제상학이 가장 실사구시적 학문이라는 점을 그 특성으로 꼽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두수 교수는 국제상학을 연구함에 있어 법적 그리고 상학적 해석의 접근법을 양분하고 있기도 하다.

이상 양자의 주장을 비평하기에, 우선 한주섭 교수는 법리가 국제상학의 연구대상이라고 하면서도, 실무관행이나 관습에 대한 엄격한 준수의 원칙만을 지극히 강조하고 있는 나머지 앞서 논자가 언급하였던 바, ‘기여’와 ‘보전’에 대한 상호 관계성의 중시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바, 혹여 이점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든다.

최두수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용어의 적절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국제상학에 있어 거래당사자 지위의 실체, 개념상 국제상학이 무역실무와 가장 연관성이 깊다고 하는 논거, 그 해석에 법적 수단이 많이 사용된다면 이에 상당한 국제상학의 본질, 국제상학이 가장 실사구시적 학문이라고 하는 배경, 양분의 접근법에 대한 논리 등에 대해서는 별단의 논거 등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적 모순이 지적된다. 다만 국제상학이 실무 · 관행 · 관례 · 관습 및 법리를 그 연구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연구분야는 차례로 무역계약 · 무역운송 · 무역결제 · 무역보험 및 무역클레임으로 대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2. 국제통상(國際通商)에 관하여

연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국제통상학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은 1990년대 중반 WTO 출범과 정부의 국제통상인력의 양성에 따른 재정지원정책에 따라 기존 무역학과가 국제통상학과로 전환되면서부터라고 한다(오용석, 2001).

‘국제통상’(國際通商)은 연구범위 및 방법, 접근방식 등에 있어 본질적 정체성이

이에 국제상거래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종합한 학문적 연구에로의 이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무역학의 발전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한 대부분의 학자들의 논고를 통해 무역학의 중심은 ‘국제상학’에 있으며 국제상거래를 중심으로 상학적인 연구와 법리적인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학문적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실례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당해 실례가 일본의 무역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 하다.

심종석

‘무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곧 ‘통상’(通商)의 어의에 비추어 ‘상인간 매매를 (장애 없이) 통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살필 수 있듯, 본래 의미가 ‘국가간 통상정책조정’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나아가 그 대상과 주체 또한 국가 . 정부기관 . 공공단체 등에 국한할 수 있을 것인 바, 따라서 정부정책 . 공익보호 . 각국간 행정규제의 기본원칙 . 국가적 차원의 지원 . 국제협력과 공조 등을 범위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비평하자면, 오용석(2001) 교수는 통상의 주체를 국가 등 공공부분으로 특정하고 있는 것과 국제통상학은 상거래를 규제하는 법과 제도가 다른 국가 또는 지역간의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유 . 무형의 상품과 화폐의 흐름에 대하여 국가간 또는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취하는 각종 통상활동 . 통상정책과정 및 통상제도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통상환경 등을 교육 또는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러나 무역의 주체를 주로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부분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과, ‘국제무역’과 ‘무역’을 아무런 구분없이 무작위로 혼용하고 있는 점, 무역학이라는 명칭이 하나의 학문을 대표하는데 적합지 않다는 점, 무역이 국제금융과 더불어 국제경제학의 한 부분이라는 점, 무역이라는 개념이 그 의미가 매우 좁아 독립적 학문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부적합하다는 점 등은 당해 논고 상 자타(自他)의 주장 여부를 불문하고 수용할 수 없는 논점이다.

요컨대 국제통상의 정체성은 ‘국가간 통상정책의 조정 및 화의’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이 마땅하고, 이는 무역과의 공통영역에 대한 관계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마땅히 무역과는 다른 별단의 개념으로 정착 및/또는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최두수 교수가 분류한 바와 같이, 무역계약 . 무역운송 . 무역보험 . 무역결제 등이 국제통상의 주된 학문분야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는 무역협정, 다자간 통상조약 및 협상, 지역주의, 긴급 . 보복조치, 통상정책 . 외환관리 . 수출확대정책 등이 무역학의 주된 학문분야가 될 수 없음과 다르지 않다.

한편 홍성규(2004) 교수는 국제통상의 주체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서 국가간 경제 교류에 작용하는 활동이라고 간주하고, 이에 국제통상학은 공적 . 공익적 . 국가적 측면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연구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⁷⁾ 또한 후발적 편제로서 무역학과에서 국제통상학과로의 전환은 서로 다른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시각과 그 수요를 근거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다른 이견없이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주장이다.

3. 무역상무(貿易商務)에 관하여

27) 이는 앞선 오용석(2001) 교수의 시각과 동일하다.

글로벌 환경하에서 무역학 분야의 연구방향 재정립을 위한 일고찰

‘무역상무’(貿易商務) 분야에 대한 정체성과 연구범위에 대해서는 오원석 교수(1995)의 논문을 그 효시(嚆矢)로 둘 수 있다. 우선 오원석 교수는 국제무역거래는 ‘국제거래관습’(國際去來慣習)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무역상무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차례로 무역거래 대상의 확대, 인터넷 시대의 도래, 대학의 학부제로의 증가추이, 국제화의 가속 등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진국 등에는 존치되어 있지 아니한 무역학 특히 무역상무가 국내대학에 존속되어야 할 이유, 무역상무의 연구 및 교육의 범위, 무역상무의 연구방법, 대학일선 교수들의 자세와 지적 소양 등을 논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원석 교수는 앞선 ‘국제상학’에서의 여타 견해와 마찬가지로 무역학의 정체성을 논할 경우 무역상무가 이를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간 무역학 분야에서 고유하게 명명되어 온 ‘무역실무’(貿易實務)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역상무’(貿易商務)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곧 ‘무역실무’상 ‘실무’라는 용어의 경시 풍조가 팽배하고, 절차적 업무수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현 시점에서 ‘실무’라는 용어가 대단히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현재 다양화된 상거래 방식에 ‘실무’라는 명칭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 ‘무역실무’라는 용어를 배척하고 ‘무역상무’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생각건대 ‘실무’(實務)라는 용어는 무역학의 정체성에 기하여 용어의 지위상 그간의 상징성이 지대하고, 연혁상으로도 실사구시(實事求是) 차원에서 명실상부할 뿐만 아니라, 어의상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무’(商務)라는 용어와 개념상 차별성이 돋보이지 않고, 당해 상거래계에 있어 (무역)계약실무 . (무역)운송실무 . (무역)보험실무 등 종속분야와의 관계성 내지 보편성을 고려할 때, ‘상무’로의 전환에 대한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무역학의 정체적 동태를 바로 되짚어 바라본 무역학 분야의 연구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취지가 담보되고 나아가 본 고 서론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간 무역학 분야에 대한 의지와 관심의 부족을 탈피하기 위한 기치가 바로 서 있는 경우에서라면 지금까지의 반성을 곁들여 ‘실무’ 아닌 ‘상무’로의 개명수용에 찬동할 수 있다.

개명수용에 따른 찬동의 논거는 무엇보다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무역학의 정체성을 논함에 있어 ‘무역’과 ‘상무’라는 어의가 명료하고, 이로부터 무역학이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존속함에 있어 여하의 반론을 불식할 수 있는 배경으로서 그 지위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역상무의 연구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한 대로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오원석 교수는 우선 무역상무의 가장 본질적인 분야는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그 이행에 따른 제반 계약 및 계약

심종석

위반에 관한 구제방법으로서의 중재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무역계약 . 운송계약 . 보험계약 . 환계약 및 상사중재를 그 실체로서 부각하고 있다.

한편 무역상무의 접근방법은 '계약적 접근방식'(contractual approach)에 기한 법리적 연구를 중심으로 주계약(主契約)인 매매계약과 종속계약(從屬契約)인 운송계약 . 보험계약 및 환계약을 계약의 성립과 이행으로 구분하는 것에 두고, 무역상무의 인접 학문영역으로서 국제사법 또는 상사법 분야, 국제마케팅과 해외투자 분야, 전자상거래 분야 등을 예시함과 동시에 특별히 국제사법 또는 상사법 분야와의 관계성에 대하여 상호 보완성을 피력하고 있다.

그 논거로서 오원석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해 있어 그간 대부분 법학교육이 실증법 위주로 또는 고시과목 위주로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하면서, 이로부터 그간 국제거래법 분야는 무역학과의 무역상무 영역으로 간주되어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 두고 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관습법 위주의 영미법계에서는 법학분야에서 다루어지는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상무에서 다루게 됨에 따라 무역상무영역이 독립적으로 확립될 수 있었다고 그 정체성의 연원을 피력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대목은 무역상무 분야와 국제거래법 분야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그 내용은 비록 양 분야가 똑같이 법리적 연구방법을 취한다고 해도 무역상무 분야는 실무적 관습과 효용성을 국제거래법 분야는 법리성을 중심으로 연구하므로 상호간의 부족한 점을 적극적으로 메우는 중에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당해 논점에 대한 비평으로서, 우선 국제상사법 분야와 무역상무 분야에 대한 상호보완의 당위는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그 시각이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실무적 관습과 효용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무역상무 분야가 과연 법학의 고유한 분야로서 상관습법의 법이론적 지식과 법리에 대한 해석에까지 지평을 넓혀 이를 다루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법리적 연구방법을 취하는 경우 (무역)'법무'와 (무역)'상무'를 동일한 개념하에서 포섭할 수 있는지, 연구방법과 범위에 기하여 가사 무역학 분야가 아닌 법학분야에 무역상무 분야가 지류 내지 분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도 무방한지, 법리적 접근방식을 위한 법이론적 과목들을 무역상무 분야가 포섭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적 또는 비교법적 연구에 대한 방법론과 실무적 관습과 효용성 정립을 위한 방법론을 병행하는 경우 상호보완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분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역실무에 기한 절차와 과정을 계약적 접근방식에 대한 명분을 앞세워 이를 등한시해도 무방한지에 대한 의문과 우려는 고스란히 남는다.

결국 무역학 분야에서 무역상무 분야를 따로 떼어내어 법학분야의 한 지류로서 구분할 수 있다면 모를 일이지만, 가사 당해 논리를 수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무역상무가 무역학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일말 석연치 못한 점이 다분하다.

글로벌 환경하에서 무역학 분야의 연구방향 제정립을 위한 일고찰

달리 일컨자면 무역상무를 학습한 무역인력이 장차 무역업계의 라인부서에 속한 실무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무의 스탭부서로서 법무서비스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문제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Ⅳ. 결론 : 무역학 연구방향의 제정립

1. 무역학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전제조건

요컨대 가감없이 ‘이국간 상인간 상거래’로 함축할 수 있을 ‘무역’은 그 본류와 지류 및 그 중심분야를 가늠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와 환경에 얼마만큼 시의성 있게 대응력을 제고하여 그 폭과 범위를 다 변화할 것인가에 보다 집중해야 하는 것이 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견고하게 틀에 박힌 학연과 지연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학문하는 본연의 사명과 자세를 우선 앞세워야 할 것인 바, 이는 무역학의 유관분야별 대타협을 위한 첩경일 수 있다.

지금까지 인접분야로부터 줄곧 지적되었던 사항으로서, 예컨대 무역학을 “일련의 학문체계로 인정할 수 없다.”, “독립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연구영역이 모호하다.”, “인접분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등의 반향에도 불구하고 무역학의 테두리 내에서 각양의 짜깁기식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에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은 마땅히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무역학의 본류를 되짚는 차원에서 겸허히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야 할 절대절명의 시기인 까닭이다.

반성의 골자는 그간 왜색(倭色)의 학풍에 침취되어 그것이 마치 제 나름의 정체성의 요체인 양, 우리 형편을 도외시하지는 않았는지, 아무 이유와 연고없이 학제간 세력규합에만 몰입하여 전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는지, 그릇된 용어 사용을 당연히 하여 혹여 인접분야와의 공조체계 구축에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배타적 학문적 습성에 기하여 유관분야의 학문적 체계를 부정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무역’은 문명사적 시각에서도 장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당해 분야에서의 오랜 관습과 관행이 지금껏 어김없이 체계화되어 진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영역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있는 중에 국제경제질서 재편의 축을 좌지우지해 가고 있다. 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무역의 학문적 실체는 견고하기 그지없고 나아가 이 자체로서도 논할 바 없이 인접분야에 당당히 그 독자성과 역사성을 선언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심종석

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무역학의 정체성을 논하는 것 그 자체가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학의 정체성을 논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올바르게 직시하여 마땅히 지난 과거의 그릇된 시각과 편협한 시각을 향한 자기성찰과 반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무역학 연구방향의 실제

앞선 선행연구를 참고할 때, 무역학은 인접분야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이 확실하다. 곧 본 . 지류의 분파여부를 떠나 (국제)경제학 . (국제)경영학, (국제상사)법학 등은 상호 보완적 대상의 실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 재삼 되짚어 돌아보면 그 한 중심에 무역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껏 거론한 바와 같이, 일련의 (유관)분야는 연혁에 비추어 무역학을 기축으로 자연스레 형성되었거나 체계화된 분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역학의 개별 유사개념을 중심으로 창설된 국내학회는 현재까지 무역학에 관하여 ‘한국무역학회’, 국제상학의 경우에는 ‘한국국제상학회’, 국제통상의 경우에는 ‘한국국제통상학회’, 무역상무의 경우에는 ‘한국무역상무학회’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해 학회에 대한 연구범위는 개별 유사개념의 정체성을 가늠하기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무역학의 정체성 내지 연구방향에 기하여 앞선 선행논문의 적절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아니면 당해 개별 학회의 연구범위가 비약되거나 달리 왜곡됨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는 이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유사개념에 기한 당해 유관학회의 연구범위를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이하 다음의 표와 같다.

글로벌 환경하에서 무역학 분야의 연구방향 재정립을 위한 일고찰

[표] 무역학의 개별 유사개념을 중심으로 창설된 국내학회의 연구범위²⁸⁾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²⁹⁾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³⁰⁾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³¹⁾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³²⁾
무역이론	무역계약	국제통상이론	국제매매
무역정책	국제운송 및 물류		국제운송
국제경제	무역보험		무역보험
국제경영	국제무역결제		국제결제
국제상무	국제상사중재	국제통상정책	국제상사분쟁
전자무역	국제통상		국제통상
해외지역연구	국제전자상거래		전자무역
	국제무역법규		국제상사법

위 [표]를 주시해보면, 우선 ‘국제상학’과 ‘무역상무’는 본질적으로 그 연구범위가 대부분 동일한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국제상학의 ‘국제무역법규’는 대체로 ‘무역계약’과 ‘국제매매’의 범위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간주하면, 무역상무의 ‘국제상사법’ 분야는 매우 이례적이라 생각된다.

다른 한편 ‘국제상학’과 ‘무역상무’가 공히 ‘국제통상’의 분야를 다루고 있음에 반하여 ‘국제통상’의 경우에는 외견상 여하히 세분화된 무역학 분야의 범위를 다루고 있지 않은 바, 이는 ‘무역’과 ‘국제통상’을 동일시 할 수 있다고 하는 일부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단서이다. 결국 ‘국제통상’은 국제통상으로서 나름의 지위를 명료히 구하는 중에 무역학의 일부분으로 인식됨이 마땅할 것인 바, 이는 다른 논증을 추보하지 않더라도 당해 분야의 대표성을 체화하고 있는 국제통상학회의 정관에 기한 위의 [표]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한편 ‘무역학’은 여타 분야의 모두를 공히 포섭할 수 있는 학문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인다. 개별 연구분야는 그 자체로서도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체계로 수용가능할 것으로, 이는 무역학의 인접분야와 유사분야를 포섭하는데 달리 무리가 없음을 시사한다.

28) 개별 학회의 정관에 기하여 작성함.

29)「www.ktra.org」

30)「www.kaic87.or.kr」

31)「www.katis.or.kr」

32)「www.krical.or.kr」

심종석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논점은 ‘무역학(과)’이라고 하는 어의 내지 분야의 대표성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법학(과)’ 분야는 그 지류로서 일반적으로 사법과 공법으로 분류되어 전자의 경우 전공으로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등이, 후자의 경우에는 민법, 상법, 국제사법, 국제거래법 등이 포함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역학(과)’ 또한 그 세부분야로서 이를테면 ‘무역이론’, ‘무역경영’, ‘무역정책’, ‘무역법규’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틀에 걸맞는 체제개편[전공]으로 그 정체성 내지 연구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지위를 표방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동일한 시각에서 달리 ‘국제무역이론’ 및 ‘국제무역경영’ 등의 명칭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무역학’의 정체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유명무실한 의미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당해 논점은 현재 국내 대학에 이름을 달리하여 편제되어 있는, 예컨대 ‘국제무역학과’, ‘전자무역학과’, ‘국제물류학과’, ‘인터넷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제상학과’, ‘무역상무학과’ 등은 마땅히 ‘무역학과’로 재편되어야 함을 함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분야가 존치되어야 한다면 그 배경에 대학(학과)특성화 내지 차별성을 부각하여 그에 합당한 이념과 당위를 선언하고, 여하히 무역학의 세부전공으로서의 종속적 지위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간 이 같은 대의가 명확하지 않았던 까닭에, 지금껏 무역(학)에 관하여 우후죽순 격의 정체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무역학의 대표성을 내세우고 있는 ‘국제상학’, ‘무역상무’ 분야 또한 이 같은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인 바, 향후 무역학의 지류로서 뿐만 아니라 세부전공에 준한 종속분야로서 개별 분야에 대한 상호 명료한 차별성과 대표성을 확립하는 가운데, 그 위상을 돋보여야 할 것이다.

3. 무역학 연구방향의 재정립에 관한 제언

무역학의 정체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유사개념들은 마땅히 ‘무역학’의 범위에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 종속(전공)분야로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역이론’, ‘무역경영’, ‘무역정책’, ‘무역법규’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차별화된 나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는 각 대학의 특성화 내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첩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선의의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 바, 이는 곧 유관(인접)분야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당해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체화할 수 있는 배경일 수 있다.

글로벌 환경하에서 무역학 분야의 연구방향 재정립을 위한 일고찰

환언하면 이는 ‘무역실무’, ‘국제상학’, ‘국제통상’, ‘무역상무’ 등의 유사개념을 바로 정립하는 중에 이를 무역학의 세부 전공분야로서 특화하여, 예컨대 종속(전공)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체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대학특성화의 관점에서도 부각할 수 있는 논점이다.

실질적 대안으로서 작게는 지금과 같이 각 대학 지명도에 따라 또는 개인별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던 수요를 전공분야별 특화된 전문가로서의 장래성을 담보로 이를 또 하나의 선택요건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하여, 이로부터 무역학 분야의 활로와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크게는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날로 그 지위와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무역학 분야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여 그 존속의 당위성을 바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지금과 같이 유사분야가 무역학의 중심학문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하나의 테두리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가능하다는 논리가 꺾이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무역학의 정체성 시비속에서 시달려야 함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학의 정체성 확립과 연구방향 재정립에 관한 사안은 그렇게 단순한 과업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그간의 이정을 돌이켜 재인식하기 위한 분야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학문체계 및 연구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틀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례로 분야별 특성화에 기하여 최근 각 대학에 존치된 로스쿨의 설립취지 내지 운영방안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최근 무역학 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무역교육인증’은 같은 시각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추진이라고 생각한다. 곧 무역교육인증은 그 근본취지를 무역교육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그에 관한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제도라고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무역인증의 목적을 무역교육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세계주의, 인본주의의 취지를 제고하고 전공교육의 역량증진을 통하여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바에 두고 있음을 참고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 세부내용은, 각 대학 및 무역학 전공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역교육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신력 제고, 각 대학의 무역교육 발전을 위하여 소속 교수들의 협력과 참여를 증대시킴으로써 학문분야 운영의 자율적 역량 신장, 각 대학의 무역교육 관련 학문분야의 세부 전공 및 타전공간의 상호 신뢰와 협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대한 공동의 대처와 학제적 연계성 배양 등에 두고 있다.³³⁾

33) 한국무역교육인증원(2009).

심종석

요컨대 이상과 같은 유의점과 시사점이 수용가능한 사안임을 전제할 때, 또한 무역학 연구방향의 재정립에 관한 당위와 이로부터 제시된 대안의 틀이 달리 배척될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하면, 지금은 바야흐로 무역학계의 구성원 모두가 주축이 되어 보다 심도있는 대안 마련에 총력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대학일선의 신진연구자에 의해 작성된 논문인 까닭에, 선천적으로 실제파악에 대한 미숙함이 그지없음과 동시에 넘보지 못할 분야의 외람된 논제를 다루고 있다는 취지에서 이내 비판의 소지가 다분할 것이라 예상된다. 다만 본고 상 본연의 목적만이라도 미약하나마 재차 되새겨질 수 있었으면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원진. 2001. 무역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2001 한국무역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 김원배. 2005. 무역학과 교과과정 현황과 방향모색. *국제상학*. 제20권 제1호.
- 박광서 . 유광현. 2008. 글로벌 무역인력양성을 위한 합리적인 무역학 교과과정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7권.
- 심종석. 2002.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11.
- . 2007.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내용 해석의 기준에 관한 법적 고찰. *통상법률*. 제71집.
- . 2009. *국제상사계약의 이론과 실제*. 열린길. 서울. 서문.
- 오원석. 1995. 무역상무의 연구방향. *무역상무연구*. 제8권.
- 윤충원. 2004. 무역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무역학회지*. 제29권 제3호.
- 오용석. 2001. 한국 대학에서의 국제통상학 위치 정립-무역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제6권 제2호. 165-166.
- 최두수 . 이학승. 1996. 국제상학의 학문적 체제와 접근법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1권 제2호. 26.
- 한국무역교육인증원. 2009. *무역교육인증편람(안)*. 한국무역교육인증원. 서울. 4-5.
- 한주섭. 1994. 무역학-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상학*. 제9권 제1호. 5-6.
- 홍성규. 2004. 일본대학 무역교육 분석을 통한 무역학의 정체성 확립방안. *국제상학*. 제19권 제3호. 327-330.
- Klein J. 1993.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Liverpool Law Review*. Chap. I. A.
- Michael J. Bonell. 1997.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2nd ed. Transnational Pub., Inc. 50-52.

글로벌 환경하에서 무역학 분야의 연구방향 재정립을 위한 일고찰

- Steven H. Gifis. 1996. *Law Dictionary*. 4th ed. Barron's Educational Series. 519.
- 絹巻康史. 2000. 貿易商務論の新しき地平-商学と法学との学際的視座からの研究分野拡大と手法の考察. *経営経理研究* 64. 19-46.
- 三橋文明. 1976. 貿易商務論の新課題. *商学論纂*(故山田隆士教授追悼号) 18. 177-200.
- 上原利夫. 2002. 商学と法学の融合-経営倫理が媒介. *経営倫理* 27. 14-16.
- ‘CISG’(1980)
- ‘EU Directive’(2000)
- ‘PICC’(2004),
- 「stat.kita.net」
- 「www.kaic87.or.kr」
- 「www.katis.or.kr」
- 「www.krical.or.kr」
- 「www.ktra.org」

심종석

ABSTRACT

A Critical Study on the Reformation of Identity and Researching Field for the Foreign Trade's*

Shim, Chong-Seok**

At the present time, in the face of international depression, the mainstream of foreign trade's field are going bad to worse. At the view point of this circumstances, what is the main difficulties and the basic sources. Actually this study dealing with foreign trade' problems regarding to the its identity and researching field. Not only it's a very delicate matter, but which needs to be deal with carefully. Framework of this papers are consist of three kind of theme. One is the discriminativeness and relationship of foreign trade related to the point of resemblance any other similarly fields. The other is definite explanation for the scope of researching fields,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international foreign practice, international commerce, trade industry, international commerce and law and so on. Another is the essential main point of foreign trade' fields based on the establish itself for the convergence with any other related similar fields. Basically, the fundamental notion of foreign trade are inter-national, inter-merchant, commerce. And then first of all, we will consider that not only foreign trade must be main fields but other similar fields will be subordinate the foreign trade field. Certainly, this view point is short cut to foreign trade stability.

Keywords : *Foreign Trad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International Foreign Practice, International Commerce, Trade Industry, International Commerce and Law.*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Daegu University Research Grant, 2008.

** Full-time Lecturer, Dep't of International Trade, College of Economics & Business Administration, Daegu University.